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구 PAC News)

www.pac.or.kr

인터넷 매체 피해구제

언론중재위원회가 도와 드립니다



Special News

포털 대상 사건처리
정착 단계로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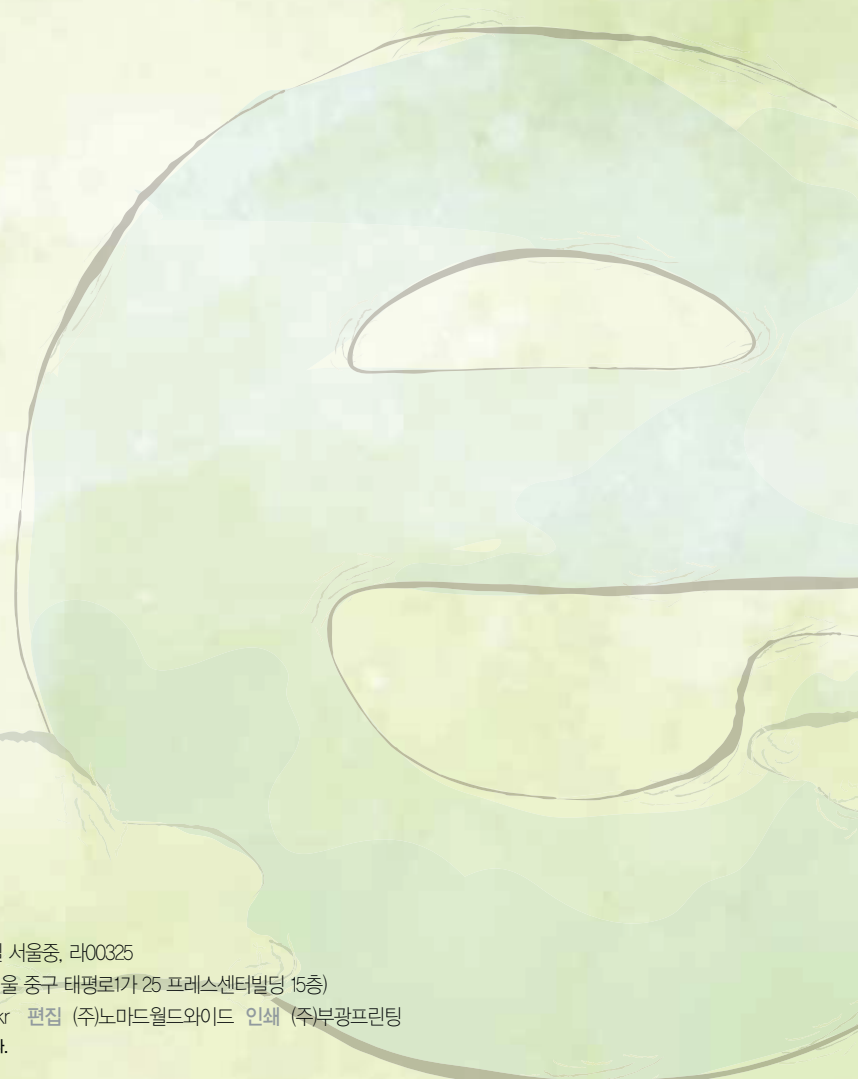
05

CONTENTS

2010. May. Vol 119



03	이달의 주요뉴스	포털 대상 사건처리 정착 단계로
04	인터뷰	“연구성과가 선진화에 기여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06	위원단상	감사하는 마음(김명혜 위원)
07	직원마당	호칭 유감(류석창 총무팀장)
08	선거기사심의후기	선거보도 유감(최승민 기사심의팀 차장)
09	백승찬의 영화세상	칸 영화제의 한국영화
10	용어해설	기각, 각하
11	기고	반론보도를 위한 제언
12	위원회 소식	
13	사건 처리현황	
14	위원동정	



포털 대상 사건처리 정착 단계로

개정법 시행 이후 745건 접수처리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 처리되는 포털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 대상 사건이 7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행 10개월째를 맞는 인터넷 뉴스서비스 대상 신청 처리는 큰 문제점 없이 정착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2009년 8월 이후 2010년 4월말까지 중재위원회에 접수된 포털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 대상 조정사건은 모두 745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의 약 36.2%를 차지했다. 이 중 실질적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건수는 모두 617건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2중재부 조원철 중재부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은 이와 관련, “포털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 대상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에 대해서는 기사제공 언론사의 합의 내용에 따라 즉각적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신청인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중재위원회 양재규 조사팀장(변호사)도 “개정법 시행이 정착단계로 들어섬에 따라 포털 관계자들도 심리 진행 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으며, 조정대상 기사에 신청 접수 사실을 표시하는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털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좀 더 연구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철 중재부장은 “가끔 포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기사제공 언론사와 포털간의 계약관계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재위원회에서 상담 및 사건 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구유희 법무상담팀장(변호사)은 “기사제공 언론사 외에 포털 기사에 대해서도 신청인들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나, 포털사별로 각각 신청서를 기재하는 부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한 번에 여러 건을 신청하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 여운규 차장(홍보팀)

▲ 서울제2중재부 중재위원들이 포털 대상 조정신청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 김민정(홍보팀)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연구성과가 선진화에 기여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 미국 듀크대학 법학대학원 (Duke School of Law) 졸 (법학박사)
-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현)
- KBS 이사
-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 국회 과기정 정책 자문위원, 외교통상부 민간자문위원, 통신위원회 전문위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현)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서울제5중재부, 1996. 9. ~ 1999. 8.)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은 미디어법을 전공한 학자이면서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로서 크게 활약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 유일의 정보통신 분야 국책 연구기관의 수장으로 재임 중인 방 원장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자 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기능과 업무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책기관으로, 통신, 방송, IT 세 가지 영역에 특화된 국내 유일의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정보사회라는 용어가 생소하던 1980년대부터 이미 정보사회의 미래를 디자인해 왔으며, 90년대 디지털 시대를 거쳐 IT 강국으로 발돋움한 지금까지도 통신, 방송, IT의 세 분야에 걸쳐 전문적인 정책을 연구하고 입안하는 유일한 싱크탱크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우리나라의 IT를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브랜드 파워를 만든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원 창립 25주년을 맞아 최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IT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기업들 몇 개를 제외하고는 민간 부문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 산업에 IT를 접목시켜 선진화를 이뤄내는 일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을 IT와 접목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등 미디어 융합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법제나 사회 시스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방통융합은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진입 장벽을 허물고 시장을 합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디어법이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한 문제입니다.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거죠. 그게 돼야지만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여 글로벌 기업도 나오는 것입니다. 매체의 공공성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영방송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공공성의 영역으로 두면 되고, 나머지 방송들은 시장의 영역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진입장벽을 허물고 나면 여론 독점을 비롯한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텐데 그 때 가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도 포털 및 IP-TV 등을 조정 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중재위원을 역임하신 입장에서 중재위원회의 역할을 평가하신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서 개인이 피해구제를 위해 사법부를 이용하는 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많은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인터넷 포털이 조정 중재 대상에 포함된 것도 실은 한국적 현상이라 볼 수 있어요. 검색 기능에 주력하는 외국 포털과 달리 우리나라의 포털은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이러한 점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포털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보도에 대해서도 조정과 중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조사 범위도 제한되어 있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겠죠. 요즘 들어 증거조사권이 강화되고 조정뿐 아니라 중재사건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중재위원회의 권한이 좀 더 강화되고, 정정과 반론 외에도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피해구제 수단을 개발하는 등 구제의 효율성이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이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의 성과가 제대로 발휘되고 실생활에 접목되어 사람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통신, 방송, IT의 저력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잘 되게 하고 선진화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옛날과 달리 연구의 결과가 정책으로 입안되는 속도가 매우 빨라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여운규 차장 사진/ 김민정(이상 홍보팀)

2차대전 발발 후 본격적인 개입은 하지 않은 채 군사훈련을 강화하던 미국은 2차대전 개입 6개월 전 뉴욕에서 하워드 브론슨 대위를 중심으로 이른바 ‘브이 디스크(V-DISC) 프로젝트’를 감행한다. 전쟁 불참으로 해외 기지에 나가있던 미군 사기가 저하되고 불만이 커지자 이에 부담을 느낀 미 정부가 브론슨 대위의 제안을 받아들여 당시 미국에서 인기가 높던 대형 재즈밴드, 오케스트라, 유명 팝가수들의 음반을 제작해 각 기지에 보급한 것이다. RCA빅타, 콜럼비아 레코드사를 통해 로이 엘드리지, 빌리 헐리데이, 다이나 쇼, 프랭크 시나트라 등 당대 최고 음악인들의 연주와 노래를 담은 12인치 78회전 시험판 축음기 음반이 1942년 각 부대로 보내졌고, 예상대로 반응은 뜨거웠다.

하지만 출시를 앞두고 대형 음반사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음악인들의 음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자 팝업계 전설로 통하는 미국음악가동맹(AFM) 위원장 제임스 페트릴로가 ‘음반 발매가 음악인들의 일 자리를 줄인다’는 이유로 녹음 금지령을 내리게 되고, 프로젝트도 무산 위기에 처한다. 다행히 중위 출신 음악가 빈센트가 음원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록 국가가 보증하겠다고 페트릴로를 설득, 극적으로 중재를 이끌어낸다.

이렇게 해서 1943년 10월, 미군승리의 기원을 담은 브이(V) 디스크가 전세계 미군기지에 보급된다. 이 음반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미군정기 미군방송을 통해 소개되었으며 우리나라에 스윙, 재즈로 대변되는 미국 대중문화보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훗날 위기에 처한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는데 기여한 빈센트 중위는 브이 디스크의 브이는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자신의 이름 빈센트의 브이를 딴 것이라고 고백했다.

1949년, 더 이상 음반을 발매할 필요가 없어지자 미 정부는 미국 음악가연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세계 기지나 배에 남아있던 음반을 전량 폐기하고, 또 FBI와 헌병대를 동원해 귀국 군인들이 미국으로 밀반입하는 브이디스크를 몰수하여 폐기처분하였다. 현재 미 의회도서관만이 이들 브이디스크 전집을 소장하고 있으며, 미 국립도서관 역시 브이디스크 일부를 구하여 소장하고 있다. 몇몇 음반은 상업적 시도로 발매되기도 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V-DISC’를 아시나요?

김문성(상담교육팀 차장, 국악 칼럼니스트)



▲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V-DISC 음반들

감사하는 마음



김명혜 위원
(부산중재부, 동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계절의 여왕인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감사의 달이기도 하다. 어린이날을 비롯하여 아버지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이 한 달에 다 모여 있다. 아이들이 어리고 부모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는 5월이 다소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다. 어린이날에는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마련해야 했고, 아버지날에는 양가 부모님들 그리고 가까이 사시던 시댁 어른들까지 챙겨야 했다. 그리고 스승의 날이 되면 아이들의 선생님들께 작은 선물이라도 드려야 했다. 선물을 줄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나는 아이들이 주는 카네이션 한 두 송이를 받으면서 중년은 5월이면 너무 피곤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 "위 아래로 챙겨야 할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 거야"라고 투덜대면서.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고 시어른들께서 타계하시면서 5월은 심심한 달이 되어 버렸다. 어린이날은 나와 무관한 휴일이 되었고 아버지날에는 친정어머니만 챙기면 되었다. 그렇게 선물 챙기기로 바꿨던 5월은 어느 덧 무심하고 밋밋하게 흘러가고 있다. 힘든 일도 지나고 나면 애뜻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더니 막상 5월에 선물을 드릴 어른들도 안계시고 아이들도 없으니 무슨 선물을 살까 고민하던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 자신들이 원했던 선물을 받고 좋아하던 아이들의 모습도 눈에 선하고, 사다트린 옷을 입으시고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사준 옷이라고 자랑하시던 시어머니의 모습도 그렇다.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하고 사러 다닐 때는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담이었지만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그런 마음을 잠시나마 가졌던 것이 미안하게 생각되었다. 또 그들의 좋아하는 모습이 나에게 더 큰 마음의 선물이 되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선물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에게 더 큰 기쁨을 준다는 말이 있나 보다. 어리석은 나는 선물을 줄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더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

학교에 있다 보니 스승의 날 즈음에 학생들로부터 이런 저런 선물들을 받게 된다. 학생들이 넉넉지 않은 주머니를 털어 작은 선물을 줄 때 나는 그들에게 행여 부담이 되지는 않았는지 걱정도 되고 고맙기도 하다. 사실 그들이 주는 선물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담은 카드가 내게는 더 의미 있고 소중하다. 나는 학생들의 선물이 내가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존경할 수 있는 스승이 되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나에게 준 선물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에 모두 다 소중한 것이지만 기억에 남는 선물은 한 졸업생이 가져 왔던 떡 한 박스였다. 이 학생은 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떡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교수님, 제가 취업하면 꼭 떡을 해가지고 찾아뵙게요"라고 말하곤 했다. 이 학생이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 만난 적이 있는데 빨리 취업해서 교수님께 떡을 선물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학생이 취업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스승의 날 즈음에 진짜 떡을 가지고 찾아 왔다. 졸업생이 학교와 스승을 잊지 않고 찾아오는 것도 고마운데 평소 자신이 한 말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대견하였다. 그렇게 자신과 타인에게 한 약속을 잘 지키고 타인에게 감사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생활도 잘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졸업생이 가져 온 떡을 학교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느낀 것은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사회에서 각박해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어 주는 따뜻한 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기계적인 지식의 전달자가 되기보다는 적이나마 내가 알고 있는 삶의 지혜를 나누고 그들의 삶을 격려하고 지켜보는 지원자가 되고 싶다. 그것이 나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학생들에 대한 나의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호칭 유감

언제부터인가 인기 연예인들이 단체로 출연하여 서로 재담을 주고받는 TV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무한도전>과 <1박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세간의 관심을 끌더니만 사우나 복장으로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앉아 농담을 나누는 <해피 투게더>를 비롯해, 연예인들끼리 웃음을 나누는 대화프로그램이 오락방송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은 듯하다.

솔직히 특정 프로그램이 어느 방송에서 방영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른다. 그냥 주말 한가한 시간에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보는 정도지만, 연예인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에 한바탕 유쾌한 폭소를 터뜨리고, 다양한 개인기와 애드리브에 부러움과 감탄을 자아내게 된다. 어떤 때는 이들의 빠른 대화에 호흡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한 템포 늦게 미소를 띠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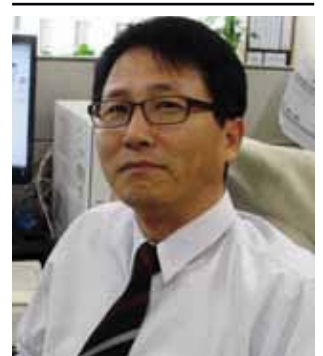
그런데 이들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이유가 하나 있다. 출연자들의 호칭 때문이다. “너, 야 임마, 오빠, 형, 언니, 누나”로 거리낌 없이 서로를 부른다.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쳐다보는 격이라면 할 말은 없지만, 불특정 다수 국민이 시청하는 방송에서 개인적 친소관계에 따른 호칭을 마구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전 이러한 불만을 사석에서 만난 모 방송의 PD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 PD의 대답은 이랬다.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연예인들의 사적 공간을 훑쳐본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기 위해 연출진과 작가가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시청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소 지나친 점은 있지만, 젊은 시청자들은 이제 이런 표현들에 익숙해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영역에서 연예인들끼리 “형, 동생, 누나, 언니”로 부르는 것이야 자유이니 참견할 이유가 없지만, 방송에 출연해서까지 사사로운 상하관계를 굳이 드러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연장자에 대해 예우를 하는 것은 우리의 고유한 미덕이지만, 젊은 연예인들의 이러한 표현이 단순한 미덕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은 나만의 과묵한 성격 탓인가? TV를 시청하는 청소년 세대들에게 은연중 나이에 따른 경직된 서열의식을 심어줄까 염려된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시사 토론 프로그램이나 뉴스를 보자. 출연자나 기자들이 우방국인 미국 대통령에 대한 호칭에 있어서는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빼고 “부시 또는 오바마가 이래저래 발언했다.”라고 언급하는 일이 빈번하면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한 독재 권력의 북한 통치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칭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예외 없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 부르고 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식당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을 “언니”라 불러본 적 없고, 병원에 있는 젊은 의사를 “선생님”이 아닌 “의사님”으로 부르며, 아이들에게 처의 사촌여동생을 “이모” 아닌 “종이모”라 굳이 강조하는 벽창호이기 때문에, 현재 방송에서 통용되는 호칭에 괜스레 불만을 느끼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언어가 없으면 생각도 없고, 언어가 바뀌면 생각도 바뀐다.’는 말을 되뇌며, 나의 까칠한 입맛에 맞는 호칭을 언젠가 방송에서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류석창
(총무팀장)

선거보도 유감

최송민(기사심의팀 차장)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2월 1일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관련 자체심의 건수는 지난 제4회 때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특히 현직 지자체장을 부각하는 홍보성 기사에 대한 제재가 많았다. 또한 불공정한 선거기사에 대해 후보자의 시정요구도 14건(5월 17일 현재)이 접수됐다. 특이한 점은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해 주의나 경고조치 등에 그쳤던 예전과 달리 경고문 및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 등 상대적으로 무거운 조치가 많았다는 점이다. 다음은 그 일부 사례다.

〈사례 1〉 어떤 지역의 여러 언론사에 제보 우편물이 도착했다. 모 교육감 후보가 논문을 표절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우편물을 발송한 제보자를 찾을 수 없었다.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다. 우편물을 받은 언론사 중 한 곳이 제보 내용을 기사화했다. 언론사측은 자신들이 기사화하지 않아도 다른 언론사에서 기사를 썼을 것이고,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제보의 사실여부는 전혀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경고문 게재 조치가 내려졌다.

〈사례 2〉 현 지자체장에 관한 여러 의혹을 한 지역 주간지에서 기사화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지자체장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관계자가 출석했다. 언론사 발행인은 심리에서 “우리는 그 지자체장의 홍보지 역할만 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나팔수 노릇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언론사가 그 동안의 태도를 바꿔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언론사가 제기한 의혹들의 일부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결정을 했다.

〈사례 3〉 모 지역 주간지는 어느 후보의 사생활 관련 보도를 했다. 보도 내용은 후보자의 여자 문제와 관련한 시종의 소문이다. 이 후보가 시정요구를 하자 해당 언론사 편집인은 “소문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소문의 내용을 적시한 것은 공익적 목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의견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언론사는 소문이 진실인지 여부는 확인해보지도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다. 당연히 경고문 게재 조치가 내려졌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 꽃이 제대로 필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해 제대로 알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잘못된 판단과 인식으로 민주주의의 꽃을 망쳐서는 안 될 것이다.



백승찬의 영화세상

칸 영화제의 한국영화

변방의 한국 영화인들에게 칸 국제영화제는 영화의 귀족들이 자기들만의 파티를 벌이는 견고한 성채와도 같았다. 일본 영화계에서는 1954년 일찌감치 <지옥문>이 황금종려상을 받았고, 이후 <카게무샤>(1980), <나라야마 부시코>(1983) 등도 그랑프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한국 영화계의 칸 진출 노력은 번번이 무산됐다. 1984년 이두용 감독의 <여인 잔혹사 물레야 물레야>가 칸에서 공식 상영됐으나, 경쟁 부문이 아닌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이었다. 2000년 임권택 감독의 <춘향뎐>이 비로소 칸 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에 첫 진출한 한국 영화로 기록됐다. 임 감독은 <취화선>(2002)으로 감독상을 받으며, 칸 영화제의 첫 한국인 수상자 기록도 세웠다. 이후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2등상에 해당하는 심사위원대상을, 전도연이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 열리는 제63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엔 <시>, <하녀> 등 한국영화 2편이 함께 진출했다. 한국영화 2편이 함께 경쟁 부문에 오른 것은 2004년(<올드보이>,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2007년(<밀양>, <숨>)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다.

이창동 감독이 연출한 <시>는 중견 배우 윤정희가 16년 만에 선택한 스크린 복귀작으로 일찌감치 화제를 모아왔다.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서 중학생 손자와 함께 사는 60대 중반 여성 미자가 생애 처음 시를 배우면서 겪는 일을 그렸다. 미자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직시하기 위해 시를 쓰지만, 세상은 그의 생각만큼 아름답지만은 않다. <오아시스>, <밀양> 등 배우의 격정적인 감정을 이끌어냈던 이 감독의 전작과 달리, <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담담히 흘러간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시>는 한 평범한 여성의 윤리적 선택과 갈등을 곰곰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평단은 <시>가 이 감독의 영화 중 대표작이라는 호평을 내놓고 있다.

<하녀>는 한국 영화사의 걸작으로 꼽히는 김기영 감독의 1960년도 동명 작품을 리메이크한 영화다. 50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부유한 가정에 들어간 하녀가 주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한다는 큰 줄거리만을 남기고 많은 세부 사항이 바뀌었다. 전도연이 새로 나타난 하녀, 윤여정이 늙은 하녀 역을 연기하고, 이정재와 서우가 이 부잣집의 주인 내외로 등장한다. <바



▲ <하녀>의 한 장면

람난 가족>, <그때 그 사람들> 등의 전작에서 조롱과 풍자를 자신의 무기로 삼은 바 있는 임상수 감독은 <하녀>에서도 한국사회 최상위 부유층의 삶을 뒤돌아 묘사한다. 전도연이 한국 최고 수준 여배우다운 연기력을 보여주며, 60대 중반의 윤여정 역시 스크린을 장악하는 카리스마를 과시한다.

두 영화는 일찌감치 칸 영화제 진출을 상정한 마케팅을 펼쳐왔다. 경쟁 부문 진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칸 영화제 개막 다음날인 13일로 개봉일을 잡아뒀다. 칸 현지에서 전해지는 각종 '레드 카펫' 기사 등을 통해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두 영화가 칸 영화제에 진출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이 됐을 공산이 크다.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를 포함한 세계 3대 영화제 중 칸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다 해도, 한국 영화계의 '칸 올인'에는 지나치고 위험한 구석이 없지 않다. 칸이 미학적으로 앞서가는 영화를 선별해 흐름을 만들어낸 영화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칸 진출이나 수상 여부가 작품의 질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더군다나 칸에도 암묵적인 국가별 배분이 있다. 한 나라에서 아무리 뛰어난 영화가 많이 출품된다 하더라도, 일정 편 수 이상은 상영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한국 영화가 칸 진출만을 노린다는 건 '제살 깎아먹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칸 영화제의 권위를 이용하되, 의존하지는 않는 지혜가 한국 영화계에도 필요한 시점이다. (경향신문 문화부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 중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중재부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1조 제1항, 제2항).

기각·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법 제15조 제4항에는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위법한 내용인 때, 정정보도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등이 그것입니다. 신청인의 청구 내용이 위의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중재부는 신청사건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19조). 이는 반론보도 청구 등 기타 청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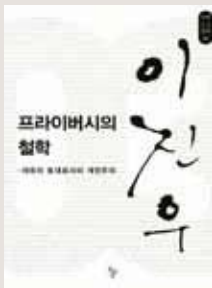
“피해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는 것은, 언론사가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정정·반론보도의 내용을 이미 충분히 보도하여 신청인의 청구 목적이 이루어진 경우와, 신청인이 지엽·말단적이거나 사소한 사안에 대해서만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각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신청 기간(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넘겨서 신청하거나 조정신청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등에 담당 중재부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홍보팀)

이 달에 들어온 책

임미숙 (정책연구팀)

이진우 지음 | 돌베개 | 282페이지



이 책은 2008년 3월 8일에 시작된 4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이루어진 이진우 계명대 철학과 교수(전 총장)의 강연을 엮어 출간한 것이다.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도덕적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해명하고자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복잡한 사회적 상호네트워크 속에서 어떻게 자유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이 책에서 프라이버시는 대체로 세 가지 차원에서 정치철학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 사적영역과 공적 영역의 관계설정을 통해 이해되는 관계의 개념이다. 둘째, 자유를 실현하는 구체적 공간으로서 공간과 영역의 개념이다. 셋째, 개인적 자유를 실현할 “가능성의 조건”을 살피는 조건의 개념이다. 개인화(individualization)가 현대사회의 필연적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사회가 개인과 사적 영역을 통해 어떻게 도덕적으로 구성되는가를 살펴보는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조직된 우리 사회에 자유주의가 어떻게 정착될 수 있는지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에필로그에는 당시 강연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윤평준 한신대 교수, 진태원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김석수 경북대 교수의 논평과 이에 대한 저자의 답변이 담겨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저자의 연구성과 및 문제의식을 공유하도록 이해를 돕는다.

김명전 지음 | 박영사 | 724페이지



2009년 7월 개정된 미디어 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문진흥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뉴스통신법, 언론중재법, 정보공개법, 전파법에 이르기까지 미디어법제를 총망라하여 정리한 책이다. 저자가 KBS한국방송 프로듀서·기자, EBS한국교육방송공사 부사장,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언론비서관을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와 삼성KPMG그룹 부회장을 역임하기까지, 언론인으로서 또는 언론경영인으로서 꼭 숙지해두어야 할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를 오랜 세월 연구한 결과물을 담았다.

특히, “언론중재법”에서는 미디어의 취재 보도로 인한 권익침해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밝히고 있으며, 이후 새로운 접근으로 “전파법”에 대해 소개한다. 전파법은 미디어법의 근간이 되는 전파자원에 관한 이해와 활용 등을 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반론보도를 위한 제언



김덕재 (한국PD연합회 회장)

몇 해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방송이 생각한다. 한 프로그램에서 유명 화장품의 성분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발단이였다. 공전의 히트를 친 제품이었던 만큼 세간의 관심은 높았고, 화장품 회사에서는 당연히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언론중재위는 직권으로 반론보도를 방송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방송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긴 법정공방이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해당 방송사는 왜 반론보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확대된 언론의 역할만큼 국민들의 권리의식도 커졌으니 언론보도를 둘러싼 다툼은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나 이를 보도한 언론사가 소송으로밖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 그리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은 중요하고도 유용하다. 특히 언론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반론보도의 경우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방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그 양상이 사뭇 다르다. 제작자 혹은 방송사들은 반론보도도 정정보도와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제작자나 방송사의 인식전환이 필요함은 물론이지만, 원인을 따져보면 주로 시청자들의 인식이나 방송에서의 반론보도 형식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론보도라는 것이 보도의 진위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주장을 게재하는 것임에도, 특히 방송에서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는 그 게재형식에 별 다른 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는 시청자들은 반론보도를 보면서 막연히 방송사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만 느끼게 된다.

이는 매체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활자매체가 논리적이라면 TV매체는 인식적이기 때문이다. 신문 독자들은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읽고 나서도 충분히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볼 수 있지만 TV 시청자들은 정해진 시간 내에서만 읽고 들어야 하는데다, TV의 특성상 시청자들은 느낌을 우선시하게 마

련이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보다는 방송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구나하는 느낌이 더 크게 남는다는 뜻이다. 방송사들은 이런 매체의 특성이나 시청자들의 반응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웬만해서는 반론보도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방송에서 반론보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제작자로서 평소의 바람을 거칠게나마 제안해본다.

먼저,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의 형식을 구별해 주는 방법이 있다. 방송내용에 있었던 오류를 바로잡는 정정보도와 단순히 당사자의 주장을 게재하는 반론보도는 엄연히 다르다. 그러므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에 비해 훨씬 더 부담스러운 형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정정보도는 프로그램 시작 직전에 화면 전체에 자막을 표시하고 음성으로 방송하는 것으로 하되, 반론보도는 프로그램 시작 후나 말미쯤에 MC가 낭독하거나 자막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면 어떨까? 물론 정정이나 반론보도의 형식은 조정과정에서 합의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고유의 형식을 정해 놓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반론보도의 개념을 잘 모르는 시청자들을 위해 반론보도문 방송 시 먼저 반론보도의 개념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특히 반론보도는 '진위에 관계없는' 당사자의 반론이라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제작자나 방송사들이 반론보도 결정을 보다 쉽게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다.

방송보도는 완벽해야 하지만 반론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 언론중재의 방식도 그 수용자인 국민과 언론사에 맞춰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의 한 당사자인 제작자나 방송사의 입장이 고려될 수 있다면 피해구제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방송이 반론보도를 좀 더 부담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국민의 반론권도 그만큼 신장될 수 있다. 자유로운 언론과 활짝 열린 반론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통이 더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현판식 동영상 발견



1981년 3월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현판식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됐다. 이 동영상은 약 40초 분량의 컬러로 촬영되었으며, 안우만 언론중재위원회 초대 위원장과 이광표 당시 문화공보부 장관이 중재위원회가 입주했던 백초빌딩(서울 중구 의주로) 앞에서 현판을 거는 장면과, 현판식에 이어서 벌어진 축하 다과회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동영상은 인터넷 신문사 동아닷컴(www.donga.com)의 '오늘 역사'란에 3월 31일자로 발췌 보도된 것을 중재위원회가 입수한 것으로, 중재위원회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위원장 해외시찰 출국

언론중재위원회 권 성 위원장은 14일 일본지역 언론피해구제 관련 기구 시찰을 위해 대한항공(KE723)편으로 출국했다. 권 위원장은 NHK 방송국, 이세신문사(伊勢新聞社), 시즈오카 신문사(静岡新聞社), TV 와카야마(WTV和歌山) 등을 방문해 일본 현지의 옴부즈맨 제도를 비롯한 언론피해 구제 현황을 시찰한다.

2010년도 중재위원 워크숍 개최 예정

2010년도 중재위원 워크숍이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KAL호텔에서 개최된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언론조정중재제도 운용상의 몇 가지 쟁점"이라는 큰 주제 하에 박재현 제주중재부장(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의 주제 및 발제자는 다음과 같다.

주제	발제자
매체별 피해구제보도문의 실효성 제고 방안	김재원 위원(제주중재부, 제주대 통역대학원 교수)
손해배상 제도의 정착화 모색	장현우 위원(서울제1중재부, 변호사)
중재 사례 확대 방안	김정탁 위원(서울제3중재부, 성균관대 신방과 교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례 검토	유익선 위원(서울제7중재부,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ADR 기본법(가칭) 제정 검토	조원철 위원(서울제6중재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보궐선거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설치 예정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7월 28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가 오는 29일 설치되어 8월 27일까지 운영된다. 발족식은 31일 있을 예정이다.

제3차 운영위원회 개최 예정

중재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안 및 재보궐 선거기사 심의위원 위촉 동의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제3차 운영위원회가 25일 11시 제1심리실에서 개최된다.

외부강사 초빙교육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강사 초빙교육이 4월 29일 6층 회의실에서 실시되었다. 장병수 KT CR 부문 대외협력담당 상무가 "IPTV의 현황과 발전전망"에 대해 강의했다.

4월말 현재 조정신청 1,140건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10년 4월까지 모두 1,140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조정성립 278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71건(동의 58건, 이의 13건), 조정 불성립결정 62건, 기각 69건, 취하 652건, 계류 8건이며, 피해구제율은 84.5%를 나타냈다. 피신청인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5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신문 264건, 신문 214건, 방송 67건, 뉴스통신 19건, 잡지 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재위원회는 4월까지 41건의 중재사건을 접수하여 40건의 중재결과와 1건의 기각결정을 내렸다. 청구권별로는 정정청구가 23건, 반론청구 15건, 추후청구 2건, 손해청구 1건으로 나타났다.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소위원회는 4월 26일 열린 2010년도 제4차 회의에서 자체 심의한 언론보도 중 총 25건의 법익침해 내용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침해유형은 피의자 신원공개 3건, 자살자 신원공개가 22건이며, 매체유형별로는 일간지 11건, 인터넷신문 10건, 뉴스통신 4건이다.

제4차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지난달 발생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법익 침해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천안함 사건이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으로 취재원이 제한적이어서 언론사가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 후 보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지나친 속보 경쟁과 과잉 취재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족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법익 침해 보도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시정권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 현황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1일 발족 이후 5월 13일 현재까지 10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정기간행물 445개 매체를 자체 심의한 결과 총 137건의 선거기사에 대해 제재하기로 의결하였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조항 위반 89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 15건, '광고제한' 위반 3건, '외부기고' 위반 30건이다. 결정내용별로는 경고문 게재 결정 1건, 경고 70건, 주의 44건, 권고 16건, 유예 6건이다.

한편,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10차 회의까지 경고문 게재 결정 3건,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결정 1건,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 3건, 권고 결정 1건, 기각 결정 4건, 각하 결정 1건이 내려졌다.

상담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10년 4월까지 862건을 상담했다. 상담 처리결과로는 조정절차 안내가 67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안내가 73건, 타기관 안내가 64건, 재상담 예정 36건, 법적절차 안내 29건, 자체종결 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매체유형을 살펴보면 인터넷뉴스서비스 433건, 인터넷신문 342건, 일간신문 319건, 방송 185건, 주간신문 158건, 뉴스통신 3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4월 2일 동아대학교 대상 교육을 시작으로 4월 한 달 동안 17차례의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대상기관별로는 교육연수기관 9건, 대학 4건, 언론2건, 사기업 1건, 지자체 1건이다.

COMMITTEEMEN



‘자랑스러운 법대인상’ 수상

권 성 위원장은 오는 27일 서울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서울대학교 법대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법대인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뉴스의 역사」 출간

이광재 부위원장(경기중재부,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명예교수)은 지난 3월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장인 이인희 교수와 함께 미첼 스티븐스(미국 뉴욕대학 교수)가 지은 「뉴스의 역사」 번역서 3권을 출간했다. 이 책은 △구어뉴스 시대 △수서뉴스 시대 △인쇄뉴스 시대 △신문뉴스 시대 △보도체계 성립 시대 △전자뉴스 시대로 이어지는 뉴스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김종량
전북일보

대통령 표창 수상

김종량 위원(전북중재부, 전 전북일보 편집국장)은 지난 4월 26일 새만금 방조제 준공식에서 새만금사업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 위원은 지난 2003년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추진협의회 본부장과 새만금완공전북도민총연대 사무처장에 취임하면서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힘써왔다.



장현우
시사만화

시사만화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토론회 참석

장현우 위원(서울제1중재부, 변호사 / 사진 맨 오른쪽)은 4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만화협회와 최문순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한국 시사만화, 새로운 100년 비전’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세계여성법관회의의 참석

이 림 중재부장(서울제7중재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세계여성법관회의의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Judges: IAWJ)에 참석했다. 세계여성법관회의는 국가, 종교, 문명 간 경계를 뛰어넘어 여성의 평등권 신장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회의로, 총 96개 회원국의 여성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장 등 고위법관과 중견법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다시 초인(超人)을 기다린다」, 「무등산에 새겨진 선혈(鮮血)의 역사」 출간

김용욱 위원(광주중재부, 전 전남일보 주필)은 35년간 기자로 활동하며 쓴 칼럼을 모아 엮은 두 권의 칼럼집 「다시 초인(超人)을 기다린다」, 「무등산에 새겨진 선혈(鮮血)의 역사」를 출간했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7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쉽고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정·중재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신청 대상 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등),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포털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 신청절차

① 신청기간

조정·중재의 신청은 대상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② 신청인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공공기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방법

- 신청서를 직접 작성 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정·중재신청서는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 담당직원에게 신청 내용을 직접 진술하는 것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메일,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등 전자문서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번호 02)397-3000, 3010, 3100

e-mail counsel@pac.or.kr

홈페이지 www.pac.or.kr

주소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5층 (100-750)





바른후보, 공정한 언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일,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 보도라고 판단될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등의 게재 또는 권고, 주의, 경고 등의 결정을 내려 공정정대한 선거보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사심의위원회는
2010년 2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운영됩니다.”



불공정 보도로 인한 선거후보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 의결하여 시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등의 게재 또는 경고, 주의 등의 결정을 내리고, 시정요구 사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선거후보자와 언론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사건을 심의합니다.

선거기사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후보자나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인용 또는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